

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
심사 보통 고

2002. 4. 16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 제출일자 : 2002년 4월 3일 회부일자 : 2002년 4월 4일

다. 상정일자 : 제1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 2002. 4. 12 :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관리실장 김승기)

가. 제안이유

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
보조사업 신청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규제사항을
완화하여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보조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간소화
 - “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,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”과
 - “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”의 제출규정을 삭제함.

※ 서울, 대전, 전남, 경북은 폐지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상혁)

-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규제사항을 완화 도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,

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려는 것으로서,

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동 조례 제5조 제2항 제6호의

『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,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』을 삭제하여도,

동 조례 제6조 제4호 규정에 의한

『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』의 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